

건강기능식품(판매업) 영업 폐업신고

1. 사무안내

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营业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2. 신청대상자 :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

3. 신청방법 : 방문

4. 관련법규
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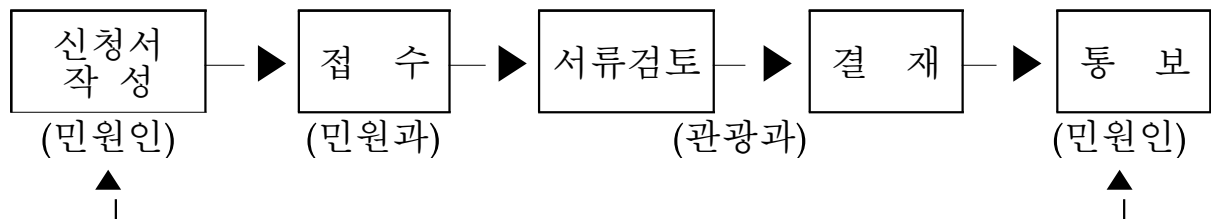
5. 수 수 료 : 없음

6. 구비서류 : 영업신고증,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

제 출 처	처리기간	처리부서	협의부서	비 고
담 양 군	즉시 (3시간이내)	관광과	-	

8. 민원처리 흐름도



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영업소	종류	인허가번호	업소명
	소재지		
폐업일	년 월 일		
폐업사유			
영업허가증·영업신고증 분실사유			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※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).

처리 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